

# 2024년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규장학생 선발 계획(안)

## 1. 선발목적

-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사업 시행에 따른 유형별 신규장학생 장학금 지원
- 교육기회 양극화 해소 및 교육소외계층의 교육기회 확대

## 2. 지원내용

구분	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 지원
선발인원	4명
지원유형	생활비 지원
지원금액	학기당 150만원
지원기간	1년(2개 학기)
기타사항	타 기관 생활비 지원(100만원 이상) 수혜한 학생은 제외

## 3. 신청 및 선발

### 가. 사업일정

내용	일정
(대학) 대학별 자체선발계획 수립 및 대상자 선정	~ 4. 15.(월)
(대학) 추천 대상자 대학 관리자포털 시스템 등록	'24. 4. 15.(월)
(학생) 시스템 등록 학생(추천 대상자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	'24. 4. 16.(화) ~ 4. 24.(수)
(대학) 장학금 신청 학생 대학 최종 추천	
(재단) 장학생 심사 및 대학별 장학금 지급	'24. 4. 24.(수) ~ 4월 말
(대학) 학생별 장학금 지급	~ '24. 4월 말 예정

나. 신청방법 : 본부 1층 학생처(장학복지팀) 접수 (방문접수, 우편접수)

※ 주의사항 :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 미비 시 탈락

다. 신청안내 : 학교홈페이지 장학공지 등

라. 기타사항

- 1) 신청기간 내 재단 필수기준을 충족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
- 2) 학교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 및 추천

#### 4. 선발기준

구분		사회적 배려계층 생활비지원
재단기준	지원대상	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재학생 (초과학기 제외)
	필수기준	2024년 1학기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로 확인이 가능한 자
	선발자격	사회적 배려계층 가정의 대학생(장애인가정, 새터민(탈북주민) 가정, 자립준비청년(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·보호연장아동 포함) 출신자,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, 다문화가정, 주거비 지원 필요자, 기타사회적배려계층)
	지원대상	-대한민국 국적으로 잔여 학기가 2개 학기 이상인 재학생(졸업학기 제외) -제외대상 : 조기취업자, 학적변동(휴학, 자퇴 등) 대상자
제출서류	제출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장애인 가정: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, 가족관계증명서 등</li> <li>○ 새터민(탈북주민) 가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, 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의 경우)</li> </ul> </li> <li>○ 자립준비청년(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및 조기종료·보호연장아동 포함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립준비청년(5년 경과 자립준비청년 포함): 보호종료 확인서</li> <li>- 조기종료아동: 퇴소확인서</li> <li>- 보호연장아동: 입소확인서 또는 재일증명서, 가정위탁보호 확인서</li> </ul> </li> <li>○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사실관계 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)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: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확인서</li> <li>○ 한부모 가족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자</li> <li>○ 다문화 가정: [한국 국적 취득 전]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[한국 국적 취득 후]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/ul> <p>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배우자 제적등본 제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주거비 지원 필요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(월세) 주거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등본</li> <li>- 기숙사, 고시원 등: 입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</li> </ul> </li> <li>※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, 가족관계증명서 제출</li> </ul> <p>*선발자격별 자세한 제출서류는 붙임 자료 참고 * 서류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</p>
	합격기준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저소득층 대상자 우선선발</li> <li>2. 직전학기 성적순 (신편입생은 제외)</li> </ol>

#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 신청서

## □ 신청자 인적사항

지원유형	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 배려계층		
제출서류			
소득분위	_____분위	성적	(평균) : /4.5(직전학기)
성명		생년월일	
학과		학번	
본인 연락처			
주소			
타 장학금 (생활비)수혜여부	장학기관	장학금액(원)	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내역

구분	항목	수집목적	보유기간	개인정보 수집 동의(√)
내용	성명, 생년월일, 학번, 연락처, 주소 등	국가근로장학생 자가진단 실시	3년	

본인은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장학금의 신청인으로서 생활비 장학금지원을 받는 동안 타기관에서 생활비 장학금지원(100만원 이상)을 중복으로 지원받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 또한 본인이 한 학기 생활비 장학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장학금에 대해 즉시 상환 또는 반환할 것을 서약합니다.

자필서명 : 동의합니다.

상기와 같이 2024년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삼성기부학금을 신청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신청자(학생)

(서명 또는 인)

구비서류 : 해당 증빙서류 1부.

학생처장 귀하

# 붙임 1

# 장학생 자격 및 제출서류

구분	자격	제출서류
1. 장애인 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‘중증’ 장애인 또는 그 자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장애인 증명서(‘중증’ 표기) 또는 장애인등록증(‘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’ 기재된 서류)</li> <li>보호자가 장애인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</li> </ul>
2. 새터민 가정 (탈북주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</li> <li>가족관계증명서(자녀인 경우)</li> </ul>
3. 자립준비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또는 출신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보호종료 확인서, 재원증명서 또는 입소확인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, 퇴소확인서</li> </ul>
4. 학생가장 본인, 조손가정 자녀	<p><b>【학생가장 본인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(자격)</b> 부모의 사망으로 실질적으로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34세 이하인 경우</li> <li><b>(자격 확인)</b> 가족관계증명서</li> <li><b>(제한)</b> 기혼자 지원 제외</li> </ul> <p><b>【조손가정 자녀】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/모가 사회적 배려계층*에 해당되어야 함</li> <li>*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조손가정의 경우), 사실관계확인서(주민센터 복지사 확인 등)</li> <li>※ 조손가정의 경우, 조부모의 사회적 배려계층 증빙서류 추가</li> </ul>
5.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* 본인 또는 그 자녀</li> <li>* 학생 및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 중 1인 이상이 지원구간 산정 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수급자 증명서), 차상위계층 확인서</li> <li>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통지서</li> <li>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확인서</li> </ul>
6. 한부모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</li> <li>* 만 22세 미만(병역의무 이행 후 취학 시 이행기간 가산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부모가족 증명서</li> </ul>
7. 다문화 가정	다문화 가정의 본인 또는 자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한국 국적 취득 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)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</li> <li>한국 국적 취득 후: (지원자)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, (부 또는 모 중 결혼이민자 및 귀화허가를 받은 자) 기본증명서(상세)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등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</li> <li>※ 단, 기본증명서상 이전 국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(개명 등) 배우자의 제적등본 제출</li> </ul>
8. 주거비 지원 필요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자격) 대학 소재지 외 국내 he지역 출신 학생</li> <li>(자격 확인) 기숙사 고지서,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자에 한함</li> <li>(제한) 해외대학 교환학생 등 해외 거주비(해당학기 90일이하 국내 거주인 경우) 지원 제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(월세): 임대차계약서, 주민등록초/등본</li> <li>기숙사, 고시원등: 입실확인서(붙임2), 사업자등록증, 주민등록등본</li> <li>※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인정범위: (미혼) 본인 또는 부모 (기혼) 본인 또는 배우자</li> <li>※ 입실확인서 임차인 인정 범위: 대학생(신청자 본인)</li> <li>※ 임차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</li> </ul>
9. 기타 사회적배려계층	1. 장애인 가정 - 8. 주거비 지원 필요자 외 대학에서 인정하는 지원구간 3구간 이하 배려계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청 자격 관련 사유 및 증빙서류 대학 보관 필수</li> </ul>

※ 제출 서류는 5년 간 대학별 자체 보존 및 서류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

※ 위 증빙서류 종류 외 대학별 자체 추천기준에 따라 선발 자격별 필요한 공식적인 서류인 경우 인정

**붙임 2****주거비 지원 필요자 제출 서류(예시)****하숙집 · 고시원 확인서**

1. 하숙집 · 고시원 주인(임대인) 인적사항			
성명	주민등록번호 (앞 7자리 기재)	주소	연락처
	590415 - 2(예시)		
2. 학생(임차인) 인적사항			
성명	주민등록번호 (앞 7자리 기재)	주소	연락처
	920319 - 1(예시)		
3. 하숙(입실) 현황			
하숙(입실)기간	년 월 일 ~ 현재		
총 하숙비(입실료)	월금 총 원	숙박비(입실료)	월금 원
		식대	월금 원
<p>상기와 같이 위 학생이 본 하숙집 · 고시원에 하숙(입실)함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>확인자 (하숙집·고시원 주인) 주 소 :  성 명 : (인)  사업자등록번호 :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</p>			
첨부물	확인자의 주소가 사업장 주소와 다른 경우, 임차계약서, 재산세납부영수증, 건축물대장, 등기부등본 중 하나 제출		

\* 목적에 맞게 양식(내용)을 수정하여 사용 가능

**붙임 3****장학금 환수·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** *(※대학공문 제출 필수)*장학금 환수·반환 예외 심의 신청서

인적사항	성 명		대학명	
	전화번호		학과	
	휴 대 폰		E-mail	
	주 소			

장학금 수혜현황	장학금 수혜학기	년도 학기	환수대상금액	원
-------------	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	---

환수예외 심의 신청사유	<i>(상세히 기술할 것)</i>
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

상기의 내용과 같이 장학금 환수 예외 심의를 신청합니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신 청 인 : \_\_\_\_\_ (인)

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

신청자 확인 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증빙 서류 제출: 환수 예외 심의 증빙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일체.</li> <li>재단은 환수 예외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로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신청자는 학적변동 등 사유발생 15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재단에 제출해야 함. 만일,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신청은 자동으로 기각될 수 있음.</li> </ol>
--------------	---